

네오르네상스장학운영규정

시행일: 2018. 8.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네오르네상스장학규정」에 근거하여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이하 “문명원”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네오르네상스 장학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지)

네오르네상스 장학은 인류의 미래문명을 선도할 새로운 학풍을 창작하고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부합하는 지구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학제도이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네오르네상스 장학운영위원회)

- ① 네오르네상스 장학제도의 운영과 기존 장학제도와의 업무 조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법인과 별도의 네오르네상스 장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재정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미래문명원장(이하 “문명원장”이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과 문명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본교 내·외의 약간 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명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명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네오르네상스 장학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기타 네오르네상스 장학 운영에 수반되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네오르네상스 장학생의 선발·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네오르네상스 장학제도와 본교 장학제도와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업무 관련 교직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회)

- ① 네오르네상스 장학에 대한 모니터 활동 등을 위해 장학생회를 두며, 장학생회는 네오르네상스 장학 수혜자로 구성한다.
- ② 장학생회는 기수별, 프로그램별 모임 등으로 조직한다.
- ③ 장학생회는 장학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자료집 편찬 참여, 웹진 편집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 ④ 장학생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장학 종류 및 재원

제5조(장학의 종류)

- ① 네오르네상스 장학은 장학부문과 시상부문으로 구분한다.
- ② 장학부문은 사회기여 장학과 학업지원 장학으로 구분한다.
- ③ 시상부문은 논문상, 문예상, 실천상으로 구분한다.
- ④ 각 장학금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장학대상)

- ① 장학부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경희학원 산하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신청한 장학활동을 위해 휴학한 자도 포함된다.
- ② 시상부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국의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7조(장학규모)

각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규모는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재원조성)

장학재원 및 장학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경비는 법인에서 조성하여 부담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 ① 장학부문의 경우 본교 학부 및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은 본교에서 지급하고, 병설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한다.
- ② 시상부문의 장학금은 본교에서 지급한다.
- ③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방법은 해당 기관에 위임한다.

제4장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제10조(주관기관)

장학생 모집 및 선발은 본교에서 주관한다.

제11조(장학생 모집)

- ① 장학부문의 장학 신청공고는 본교 홈페이지, 대학주보, 문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② 시상부문의 장학 신청공고는 본교 홈페이지, 대학주보, 문명원 홈페이지, 국내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12조(선발)

- ① 장학생의 선발절차는 별도로 정한 심사내규에 따라 진행한다.
- ② 장학부문의 장학생 선발은 위원회가 주관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시상부문의 장학생 선발은 위원회와 신문방송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장학선발 결과를 법인에게 통보하고, 법인은 장학선발에 따른 재원을 해당 기관에 전출 및 지급한다.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13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장학 증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한다. 지급기한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학생인 자가 법령 및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 등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2. 재학 기간 중에 동일 종류의 장학금을 이미 수혜한 경우.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시금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장 장학생 의무사항

제16조(보고서 제출)

네오르네상스 장학생은 장학활동이 마무리된 후 소정 양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장학생회 활동)

네오르네상스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생회의 자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문명원 교육 및 행사 참여)

네오르네상스 장학생은 문명원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보칙)

네오르네상스 장학제도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본 규정이나 별도의 지침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각 장학금의 종류 및 내용

부문	구분	장학명	내용
장학	사회기여	인턴십	국내외 NGO, NPO, 정부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개인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활동	국내외 NGO, NPO, 정부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개인이나 팀에 대한 지원
	국내외탐방	네오르네상스 취지에 부합하는 현장탐방을 진행하는 개인이나 팀에 대한 지원	
학업지	생활지원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부합하는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빈곤, 소수자 또는 기타 문제로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원	특별교육과정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의 국내외 교육과정 참여자에 대한 지원
	연구조사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부합하는 국내외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연구 조사자에 대한 지원
	우수 보고서	학기말 우수 보고서 제출자에 대한 지원
시 상	논문상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부합하는 자유형식의 학술 논문 및 학술 에세이 시상
	문예상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부합하는 문예작품(소설, 시 부문)에 대한 시상
	실천상	네오르네상스 정신에 부합하는 실천활동에 대한 시상